(개정 2018.12.18., 시행 2018.12.26.)

대출계약 철회 신청서

▣ 채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	
연락처			
▣ 대출계약 내용			
은행명	○○은행	지점명	
대출상품명			
대출계좌번호		대출금액	
대출실행일		대출계약 철회기간	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(실행일 미포함)
본인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(가계용) 제 4조의 2에 따라 본인과 귀 은행 간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를 신청하며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이 지급한 부대비용 차액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입금계좌		계좌번호	
예금주			

☑ 대출계약 철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4조의2에 의해 철회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회기간 이내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 전액 상환하여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☑ **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대출관련 정보는 5영업일 이내에 삭제됩니다.**

☑ 대출계약 철회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.

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 또는 인)